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감 사 보 고 서

제 16 기

2017년 03월 01일 부터

2018년 02월 28일 까지

제 15 기

2016년 03월 01일 부터

2017년 02월 28일 까지

동 서 회 계 법 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중

2018년 4월 19일

검토대상 재무제표

우리는 별첨된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

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8년 2월 28일
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
시하고 있습니다.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29
강원지점: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126(학성동)

동 서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형 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4월 1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수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
될 수도 있습니다.